

4. 치근단 병소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상병에 일률적으로 장기 실시된 근관치료의 타당성 여부

■ 청구내역 (A~J사례)

- 상병명 :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 내원일수 : 18일 내지 48일
- 주요 청구내역
 - 차-19-1 근관내기존 충전물제거 [1근관당] 1*3*1
 - 차-10 발수 [1근관당 1회당] 1*3*1 또는 1*4*1
 - 차-11 근관세척 [1근관당 1회당] 1*3*15 내지 32
 - 차-12 가압근관충전 1*3*1
 - 다191가. 치근단 1매 1*1*2 또는 1*1*3
 - 다197가 파노라마 1*1*1

■ 심의내용

- 근관세척(차11)은 고시 제2007-46호에 의하면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 정도 인정함. 다만, 심한 치근단 농양 등의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음.
- 동 요양기관은 전건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k047)상병으로 주로 2일~4일 간격으로 근관세척(차11)을 수개월 동안 12일~30일 실시하여 근관세척(차11) 일부가 심사 조정되었으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 제기되어 논의함.
-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근관세척(차11)은 임시가봉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구강내 세균이 침범하여 치유되는 것을 방해하여, 근관세척(차11) 실시 후 반드시 임시가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치조백선 (lamina dura), 발치, 치근단농양 등이 있어 근관세척(차11)을 장기간 실시할 경우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 치근단 방사선촬영 등을 확인하면서 지속적 치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따라서, 동 건의 10사례(A~J)는 진료기록부 상 증상기록이 미비하고, 치근단방사선 촬영에서도 치아상태를 확인할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전건 임시가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동 건(A~J 10사례)에 산정된 근관세척(차11)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기각)

■ 참고

- Pathways of the Pulp. 10판 번역본. p374-376, 03 근관충전의 시기
- 임상근관치료학. 3판. 임성삼 외 도서출판 의치학사 p167 I 근관충전의 시기
- 최신근관치료학. p308 II 근관충전의 시기